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진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 현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의 경우 사망시 경건하게 예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의 사망시 공적관계 인원이 주로 참여함을 감안하고 공헌도, 유가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적인 차원에서의 장례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청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집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명확하게 마련하여 소속감과 명예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하여 대상을 전직·현직 시장 등 그리고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으로 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위원 정수, 고문의 위촉, 집행위원회의 설치 등의 관하여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장례비용에 관하여 시청장에 소용하는 비용은 시가 부담 하되, 조문객 식사비용 등의 비용은 제외하고 그 외 비용이 필요한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비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서울특별시에 공헌한 공무원 등에 관한 장례 사항을 명확하게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